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」 개정요약서

1. 행정규칙명

□ 「**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**」(관세청 훈령 제2363호, 2024. 12. 4.)

2. 개정사유

□ **관련 고시 통폐합** 등에 따른 인용고시·조문 변경사항 **반영** 및 **용어 통일**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**보완**

3. 주요 개정내용

□ **인용 고시** 조문 **통폐합*** 및 명칭** 변경내용 **반영**(제1·2·3·9·18조)

* 「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」를 폐지→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로 통합

** 「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→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/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→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

□ **관세행정 용어 변경** 사항 **반영**(제3·16·19·27·30·32조)

* 기업심사→관세조사 / 종합심사→갱신심사 / 본부세관의 명칭 통일

4. 신구 조문대비표 : "붙임"

5. 시행일자 : 2024. 12. 11.